

[illegible]

	투자신탁 규모변동에 따른 위험	투자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,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.		
매입 방법	· 17 시 이전: 2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 · 17 시 경과후 : 3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		환매 방법	· 17 시 이전: 3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4 영업일에 지급 · 17 시 경과후 : 4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4 영업일에 지급
환매 수수료	해당사항 없음			
기준가	산정방법	- 당일 기준가격 = (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- 부채총액) /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- 1,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		
	공시장소	판매회사 본·영업점, 집합투자업자 (www.trustonasset.com) · 판매회사 ·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(dis.kofia.or.kr)에 게시합니다.		
과세	구 분	과세의 주요내용		
	집합투자기구	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.		
	수익자	과세 시기	세율	세액 공제
		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과세	1)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.5~3.3%(나이 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) 단, 이연퇴직소득은 3.3% (지방 소득세 포함) 2)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.5% (지방소득 세 포함) 단,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	(2023.1.1.이후) 연금저축계 좌에 납입한 6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900 만원 한도로 12%(종합소득금액 4.5 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 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.5 천만원 이하인 경우 15%)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 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. 다 만, 「소득세법」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※ 지방소득세 별도
		※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※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,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,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				
전환절차 및 방법	해당사항 없음			
집합투자업자	트러스트자산운용(주) (대표번호: 02-6308-0500 / 인터넷 홈페이지 : www.trustonasset.com)			
모집기간	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	모집·매출 총액	모집규모를 정하지 않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	
효력발생일	2023. 3. 3.	존속 기간	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	
판매회사	집합투자업자(www.trustonasset.com), 한국금융투자협회(dis.kofia.or.kr) 인터넷홈페이지 참고			
참조	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,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4 부,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(43 페이지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			

